보도참고자료 : 동반성장위원회 기자브리핑('11.2.23) 배포자료

동반성장위원회
업종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

2011. 2. 23

동반성장위원회

목 차

Ⅰ. 업종별 실무위원회 설치목적 ·····1

Ⅱ.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·····2

〈 붙임 〉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·····4

Ⅰ. 업종별 실무위원회 설치목적 및 경과

□ 설치목적

○ **주요 업종별로 동반성장 추진을 확산**하고, 경제적·사회적 동반성장 이슈를 **효과적·심층적으로 논의**

○ **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추진노력**을 **업종별로 구체화·현실화**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업종별 실무위원회를 설치

□ 추진경과

○ '10.12.13 동반성장위원회 1차회의시 「**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**」 의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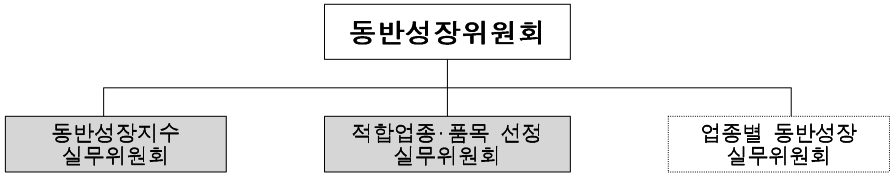
- **분야별 실무위원회**와 **업종별 위원회**의 설치 근거 마련

> **제7조(실무위원회 등)**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>
> ②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○ '11.1월 2차회의시 **「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지침」** 심의·의결

- 동 지침에 근거하여 **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, 중소기업 적합업종·품목 실무위원회, 업종별 실무위원회**를 설치

*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는 2회 개최('11.1.21, 2.18)



○ '11. 2월 업종별 실무위원회 **위원 구성**

* 실무위원회 위원은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촉 (「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지침」 제5조)

Ⅱ. 업종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

1. 업종별 실무위원회의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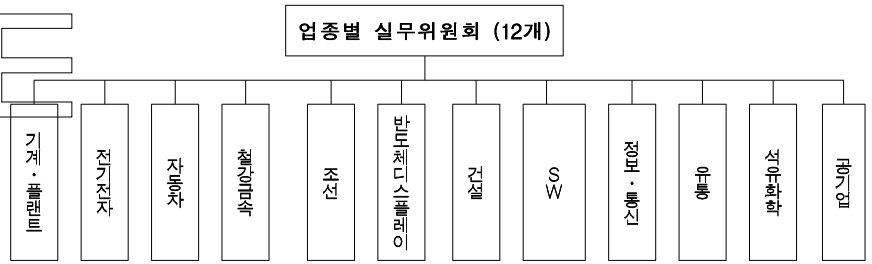
◈ (편제) **동반성장 관련 이슈가 많은 12개 업종**을 중심으로 구성

◈ (구성) 업종별 수급구조를 감안하여 **대표적인 대기업**(담당 임원급)과 **중소기업**(대표이사) 및 **유관기관**(협회, 전문연구기관) 인사로 구성하되

○ **정부**(업종별 담당 과장)의 관련 인사도 옵저버로 참여

□ 편제

○ **총 12개 업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**



□ 인적 구성방안

○ **대기업**은 구매·조달·하도급 또는 동반성장 전담조직 관련 **담당 임원급**으로 구성

- **중소기업**은 업종별 수급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의 **대표이사**로, **유관기관**은 업종별 협회나 전문연구기관의 **본부장급** 인사로 구성

- 아울러 실무위의 논의사항에 대한 **정부차원의 뒷받침**을 위해 **관련 부처의 업종별 담당과장**을 옵저버로 포함

□ 기타 운영관련 사항

○ **(위원장)** 실무위원중 **동반성장위원장이 위촉** (운영지침 제6조)

○ **(임기) 2년**으로 하되, 인사 이동 등의 경우 **차임자가 당연 승계**

○ **(개최) 분기별 개최**를 원칙으로 하되, **필요시 수시 개최***

* (운영지침 제10조)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 1/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, 또는 단독으로 회의 소집 가능

2. 업종별 실무위원회의 주요 기능

□ **업종별 동반성장 우수사례**를 **발굴·공유**하고 **산업현장으로 확산**
(例: Best Practice 사례집 발간)

□ 경제적·사회적 **동반성장 주요 이슈 논의 및 공동 대응**
(例: 원자재가격 상승 공동 대응, 불공정 관행의 자발적 시정 약속)

□ **업종별 동반성장 모델 개발**
(例: 성과공유제, 해외 공동진출 전략,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수립 등)

□ 동반성장 관련 **對정부 정책건의** 과제 및 **제도개선 과제**를 발굴, **동반성장위원회에 상정**

□ 업종별 간담회, 발표회, 토론회, 워크샵 등을 통한 **자발적인 의견교류** 및 **기타 동반성장 연구과제** 발굴·검토

3. 향후 추진일정

□ 3월중 동반성장위원장 주재 **실무위원장·간사협의회** 개최

□ 3~4월 중 각 실무위별로 **1차 회의를 개최**하여 **업종별 논의를 본격화**

붙임 **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지침**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지침은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(이하 "운영규정"이라 한다) 제7조에 규정한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

제 3 조(실무위원회의 설치) 동반성장위원회 소속하에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, 중소기업 적합업종·품목 선정 실무위원회,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를 둔다.

제 4 조(기능) ①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법 및 평가 대상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
2. 동반성장지수 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

②중소기업 적합업종·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중소기업 적합업종·품목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
2. 중소기업 적합업종·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
3. 대기업의 진입 및 사업이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③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 관심이 큰 업종별 동반성장 관련 사항 및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

2. 기타 동반성장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교류 및 정부 건의 정책과제 발굴

④각 실무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타 실무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·검토 등을 수행한다.

제 5 조(구성) ①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업계 관계자, 학계·연구계 등 전문가 중에서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실무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사무처리 보좌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
제 6 조(실무위원장) ①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중에서 업무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②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·주재하고, 소관 사항을 총괄한다.

③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(위원의 임기등)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8 조(위원의 해촉) 실무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반성장위원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실무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촉될 당시의 소속기관 및 기업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
3. 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5. 기타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 9 조(위원의 보결) 실무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요청해야 하며,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

제 10 조(회의) ①실무위원장은 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, 또는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제 11 조(운영) ①실무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 속한 안건을 상정·심의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업종별 분과(TF)를 둘 수 있다.

③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동반성장위원장에게 보고하고,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수당 등)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 활동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,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